서울특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

(박성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747 발 의 년 월 일:2023년 05월 26일 발 의 자:박성연, 고광민, 김규남,

기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호, 김원태, 김재진, 김형재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박영한, 서상열, 신복자, 심미경, 유만희, 유정인, 윤영희, 윤종복, 이은림, 이종태, 임춘대, 최민규, 최호정, 홍국표 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건축물 해체공사는 공사 규모, 구조, 위치, 주변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작업이며 최근 몇 년간 건축물해체공사 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.
- 이에 따라 현장에서 실시되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, 안전한 해체공사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으로 하여금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과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시장으로 하여금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.
- 다. 해체공사 자문, 안전교육, 표지판 설치, 안전조치 등 해체공사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건축물관리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건축물"이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. 다만, 「건축법」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.
- 2. "관리자"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.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. 3. "해체공사"란 건축물을 건축·대수선·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위하여 「건축물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0조에 따른 허가를받아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해체작업자"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 자로서 법 제32조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해체

- 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 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는 시장의 해체공사 안전관리 시책에 협조하고 안전한 해체공사 수행과 소음·진동·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공해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침) ①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.
 - 1. 인접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- 2. 주변 교통 및 보행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- 3. 해체작업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5조(해체계획서의 작성 등) ①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,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(이하 "해체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해체작업자는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여 해체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제6조(해체공사 자문)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는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 제49조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에 해체공사 관련 자문을 요청

할 수 있다.

- 제7조(안전교육 등) ① 시장은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자치구 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제1항에 따른 안 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8조(표지판의 설치)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 물의 규모, 해체공사 기간, 해체공법, 해체장비의 종류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.
- 제9조(안전조치 등) ①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시장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즉시 관리자 및 관할 구청장에 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점검,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10조(관계기관 협조 등) ①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, 관계기관 등에 합동 현장점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가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